

대통령령 제 호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7호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5조의4제2항제3호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”을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)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. 1. ~ 6. (생략) 7. 징계 사유가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. 다만,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, 혐의자·관련자·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.	제25조(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 1. 2. (생략) 3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. ~ 11. (생략) ③·④ (생략) 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② (생략)	제25조의4(징계의 감경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----- ----- -----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2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----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 제1호 각 목----- ----- ----- -----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 제1항제1호 각 목----- -- <삭 제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